

제344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2023. 5. 1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

【인재개발원 소관】

1.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

기획경제위원회
[인재개발원]

냉 · 난방시스템 교체

《전문위원 검토의견》

-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·난방시스템의 내구연수 현황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 교육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시기에 설치하는 어려운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.

〈답 변〉

- **(냉·난방시스템 내구연수) 9년**(조달청 고시 2021-41호)
- 금번 교체 대상 41대는 '07. 9월 구입·설치하여, 법정 내구연수(9년)를 7년 초과하여 16년 동안 사용한 제품으로, '20. 4월부터 부품생산이 중단되었음
- **(추경 편성의 시급성)**
- 해당 냉·난방기 41대 중 12대는 실외기 고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고, 서비스 기간 종료로 부품 교체 및 수리 불가
 - 나머지 29대도 고장 시 부품 교체 및 수리 불가
- ⇒ 하절기 및 동절기 냉·난방 정상 가동을 위해 집합 교육이 없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교체할 계획

<냉·난방기 전체 현황>

구 분	계	교육동	행정동	후생동	생활관	기타
계	161	47	35	18	59	2
강의실, 휴게실 등	133	38	22	12	59	2 (세탁, 운전)
복도(홀)	28	9	13	6	-	-

성적우수자 등 시상

《전문위원 검토의견》

- 대상인원은 237명 동일하지만, 장기교육과정 및 신규교육과정 성적우수자 등에 포상하는 금액을 증액한 사항으로, 추경에 증액 편성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《답 변》

- (사업개요) 본 시상금은 교육훈련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연수생 [①성적 우수자, ②연구과제(분임)발표 우수자, ③자치활동 유공자(학생장)] 등에게 교육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지급

- (현 황) '19년도까지는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나,

- ▶ 종합평가 - 장기교육 : 최우수 50만원, 우수30만원
- 신규교육 : 최우수 30만원, 우수20만원, 장려 10만원
- ▶ 분임활동 - 장기교육 : 최우수 30만원, 우수20만원, 장려 15만원
- 신규교육 : 최우수 30만원, 우수20만원
- ▶ 연구논문 - 장기교육 : 최우수 30만원, 우수20만원, 장려 10만원

- '코로나19'로 '20.부터 '23. 본예산까지 예산 축소 편성

* '19년 34.5백만원 → '20년 17.5백만원 → '21~'23년 각 10백만원

- (증액사유) 올해부터 전면 집합교육이 시행되었으나, 현 사업비로는 시상금 감액 조정 불가피하여, 5백만원 증액 편성

⇒ 증액 시에도 '코로나19' 이전보다는 감액 지급 예정임

- * 例) - 장기교육 성적 최우수 : 코로나 前 50만원, '23.본예산 20만원, 증액시 30만원 지급
- 신규과정 성적 최우수 : 코로나 前 30만원, '23.본예산 15만원, 증액시 20만원 지급

□ 시상금품 및 격려금품 지급기준과 지급액

지급기준과 지급액

대 상	시 상 내 역(개정전)	시 상 내 역(2021. 개정)
기본교육 성적우수자	· 최우수(1명) 30만원 · 우수(1명) 20만원 · 장려(1명) 10만원 또는 상당의 시상품·격려품	· 최우수(1명) 10~30만원 · 우수(1명) 5~20만원 · 장려(1명) 3~10만원 또는 상당의 시상품·격려품
3개월이상 장기교육과정 성적우수자	· 최우수(1명) 50만원 · 우수(1명) 30만원 · 장려(1명) 20만원 또는 상당의 시상품·격려품	· 최우수(1명) 15~50만원 · 우수(1명) 10~30만원 · 장려(1명) 5~20만원 또는 상당의 시상품·격려품
연구·과제 발표 우수자 또는 우수팀	· 최우수(1명) 30만원 · 우수(2명) 각 20만원 · 장려(2명) 각 10만원 또는 최우수분임 30만원 우수분임 20만원 상당의 시상품·격려품	· 최우수(1명) 10~30만원 · 우수(2명) 각 5~20만원 · 장려(2명) 각 3~10만원 또는 최우수분임 10~30만원 우수분임 5~20만원 상당의 시상품·격려품
자치활동유공자 모범연수생 등	· 1인당 5만원 상당 격려품 (단, 3일 미만 학생장은 3만원 상당의 격려품)	· 1인당 1~5만원 상당 격려품 (단, 3일 미만 학생장은 1~3만원 상당의 격려품)

※ 코로나19로 인해 시상금 지급액 규정을 정액에서 변액으로 변경(2021.10.20.)